#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4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 : 윤후덕 · 김수흥 · 김철민

전혜숙 • 기동민 • 김경협

박 정ㆍ이원욱ㆍ김정호

이광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실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그러나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음. 이는 증여로 의제될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법상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음.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이익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따라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 래비율이 변동되어 증여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 업 간 분할 · 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도 제약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이에 과세의 목적과 방식 등이 유사한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제2호 후단 신설).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사업부문별로 아래 각 목의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 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 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 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 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 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 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 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 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 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 금액 <후단 신설>

가. ~ 다.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한쪽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및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의 계산 및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
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사업
부문별로 아래 각 목의 세후
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
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
의 계산(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